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가단2818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1. 31.

판 결 선 고 2024. 3. 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8,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D은 2023. 4. 28.까지 위 투자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게 대한 위 투자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D에게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법인사용인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연대보증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기는 하나, 연대보증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D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 상단에 “(주) E”이라는 명칭, 주소,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D은 B으로부터 공사비로 금액 27억 공사비 있습니다”라는 기재 중 “27억 공사비” 부분에 위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D이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7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D이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여기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확인서는 D이 작성하고 피고의 인영도 D이 날인한 점,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을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